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목적]** 본 시방서는 서울메트로 본관 옥상공원화공사 중 폐기물처리에 관한 것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처리물량]** 도급자는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산출한 폐기물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조치하고 폐기물 물량 증감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3 조 **[작업범위]** 도급자는 폐기물을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한다 (단 운반은 상,하차를 포함한다.)

제 4 조 **[처리기준 및 방법]** 도급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그 운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반출량 측정]** 가. 폐기물 반출량 측정은 동부푸른도시사업소가 지정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을 하며, 단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의 계량소에서 계량할 수 있다.
나. 도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공인계량 증명업소에서 계량할 수 있다.

제 6 조 **[안전관리]** 도급자는 적재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제반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준수사항]**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자는 사전에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폐기물 운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상 및 배상]** 발생폐기물은 관계법상 지정하는 장소외에는 다른곳에 유출하지 못하며, 다른물질을 섞어서 반입해서도 안된다. 또한 운반, 처리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에 따른 제비용 및 보상(배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9 조 **[기 타]** 가.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공사 시공업체가 발생폐기물 운반, 처리 요구시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제반사항 이행 등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본 용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도급자에게 야간작업을 명할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시공중 설계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협의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시방서

제 1 조 **[업체자격]** 본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 자로서 발생폐기물을 충분히 운반, 처리할수 있는 업체

제 2 조 **[의무사항]**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상 배출자 신고등 제반사항을 조치하고 처리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폐기물인계서,처리증명서,관련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대리수행]** 도급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폐기물 운반,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의취소]** 동부푸른도시사업소는 도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처리를 중단시키는 경우.

나. 폐기물인계서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 도급자가 발생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라. 도급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 5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도 관계법규 준수는 물론 구청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야 하며, 본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동부푸른도시사업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